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04

2024년 4월 2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4월 3일, 정준호 의원 외 2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4월 2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준호 의원)

가. 제안이유

○ 기후 위기와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공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전기차 상용화 시대 준비를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가치와 효율이 반영된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을 유도하는 보급 정책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제2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공공/민간)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우선 고려할 것을 명시함(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배터리의 자원순환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할 것을 명시한 것이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공용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와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때 배터리의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임.

환경부 역시 2024년부터 관련 지침[1]을 개정하여 재활용성이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사용 후 배터리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

---

1)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2.19.)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배터리의 자원순환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보급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있다”를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터리의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배터리의 자원순환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보급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후단 신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며, 이 경우 배터리의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생 략)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터리의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